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235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정희용・김성원・윤영석

서천호 · 박덕흠 · 강승규

신성범 • 이인선 • 박충권

박정하・백종헌・정동만

박성민 · 김예지 · 조승환

김태호 · 최은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

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을 지정·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 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광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 및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 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우영할 수 있다.

- ②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5.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③ 그 밖에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광역대표도서관의"를 "광역대표도서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역대표도서관을"을 각각 "광역대표 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광역대표도서관을"을 "광역대표도서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광역대표도서관에"를 "광역대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②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	2
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u>사항</u>	<u>사항(지역도서관의</u>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
	형별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
	<u> 함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및 광역장
	<u>애인대표도서관</u>
<u><신 설></u>	제26조의2(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
	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

- <u>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u> <u>있다.</u>
- ②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 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 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 5.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 6.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제27조(<u>광역대표도서관의</u> 건립비 등 보조) ① 국가는 <u>광역대표</u>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광역대</u> <u>표도서관을</u>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28조(<u>광역대표도서관을</u>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 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 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 에 있는 <u>광역대표도서관에</u> 제 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그 밖에 광역장애인대표도
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제27조(<u>광역대표도서관 등의</u> 건
립비 등 보조) ① <u>광역</u>
대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
표도서관을
②
<u>광역대</u>
표도서관 또는 광역장애인대표
도서관을
제28조(<u>광역대표도서관 등을</u> 위
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광역대표도서관 또
는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에

경우에도 또한 같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